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87
----------	-------

발의연월일 : 2026. 5. 29.

발 의 자 : 김 현 · 이 건 태 · 김 우 영
조 인 철 · 이 주 희 · 최 민 희
권 향 엽 · 이 정 현 · 장 종 태
조 계 원 · 박 해 철 · 박 민 규
이 훈 기 · 김 남 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고 제공 방식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의 이용자 불편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보 선택권과 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및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신뢰저하로 건전한 광고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납치 광고 등의 신유형 불편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편 광고의 제공·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광고 사업자 정의 규정 마련(안 제2조제30호 신설)

나. 플로팅 광고, 전환 광고 및 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마련(안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다.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51조제2항제5호 신설)

라.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적용 제외 근거 마련(안 제53조제1항)

마.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제외 근거 마련(안 제99조제5호)

바.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4조제5항제7호의3 신설 및 제6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온라인 광고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매체의 화면에 온라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방해하는 행위
13.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의사와 다르게 또는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화면을 광고화면으로 전환하는 행위
14.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이용자가 광고가 아닌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 광고 사업자

제53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9조제5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4호의20”을 “제4호의20·제7호의3”으로 한다.

7의3.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위반하여 광고를 배포·
게시·전송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9. (현행과 같음) 30. “온라인 광고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매체의 화면에 온라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u><신설></u>	제50조(금지행위) ① ----- ----- -----한정하고,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포함한다.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생 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

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를 제한·방해하는 행위

13.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
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의 의사와 다르게 또는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화면을 광
고화면으로 전환하는 행위

14.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
면서 이용자가 광고가 아닌 정
보를 인식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온라인 광고 사업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제외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제5호의2,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7의2. (생략)

<신설>

8. ~ 17. (생략)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제4호의17·제4호의18·제4호의20·제8호·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제4호의15·제4호의21·제17호에

-----.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위반하여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한 자

8. ~ 17. (현행과 같음)

⑥ -----

제4호의20·제7호의3-----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 과·징수한다.	----- ----- ----- -----.
--	---